-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임종국 의원 외 30명

나. 의안번호: 제1937호

다. 발의일자: 2020. 10. 16.

라. 회부일자: 2020. 10. 26.

2. 제 안 사 유

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,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
- 다.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노력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, 제8조).
- 바.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, 제11조).
- 사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2조, 제13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해당 사항 없음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 본 제정조례안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(제1조), 용어 정의 (제2조), 시장의 책무(제3조), 기본계획 수립(제5조),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운영(제10조, 제11조)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(제12조)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<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>

조(제 목)	내 용
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	- 목적: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서울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도모 - 수소산업, 수소사업, 수소사업자, 연료전지 등 관련 용어 정의
제3조(시장의 책무)	-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, 수소사업자 지원대책 강구
제5조(기본계획 수립)	-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
제6조(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	-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기술개발 촉진 위한 사업추진 규정
제7조, 제8조	- 수소산업 관련기업 등의 유치 노력 및 경비지원 사항 규정
제10조, 제11조	-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제12조, 제13조	-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규정

○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2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,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총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¹)에서 「수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²)」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음.

 다만, 안 제3조는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,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사업자 등에게도 별도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안 제11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'행정1부시장' 보다는 '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'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할 때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¹⁾ 강원, 경기, 경남, 경북, 대구, 울산, 인천, 전북, 충남, 충북 등 총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※ 수원시, 전주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

²⁾ 근거 법령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